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306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8월 11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을 설립하고 법인의 운영 및 시설관리, 공연예술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
- 나. 이에 202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1) 사 무 명 :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금

2) 추진근거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-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

3) 필 요 성 : 다양한 공연, 전시를 통한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등 세종문화회관의 문화예술 진흥 사업수행을 위하여
출연 필요

4) 사무내용

- 세종문화회관의 운영
-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
-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·관리, 보급 및 조사·연구
-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
-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위탁하는 사업

5) 소요예산 : 53,588,967천원

※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

나.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기관 개요

1) 소재지 :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

2) 규 모 : 대지 21,083㎡, 건물 64,066㎡ (지하 3층, 지상 6층)

- 공연장(세종대극장, M씨어터, 체임버홀, S씨어터), 전시관(세종미술관, 세종충무공이야기), 교육시설(세종예술아카데미) 등

3) 전경 및 위치도

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김영미 (☎ 2133-2519)